**채권양수도계약**

양도인(채무자)홍길동(이하‘양도인’)는자신이보유한제3채무자임꺽정(이하‘채무자’)에대한채권을양수인(채권자)성춘향(이하‘양수인’)에게양도하기로하고, 다음과같이채권양도양수계약을체결한다.

* + 1. (목적)

본계약은양도인이채권을양도하고양수인이채권을양수함에있어수반되는제반사항을사전에정하기위함이다.

* + 1. (양도채권의내용)

양도인이채무자(임꺽정,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000)에게가지는대여금채권금[1억]원정과이에대한[연5]%의이자채권전부

* + 1. (채권양도의통지)
       1. 양도인은채무자에게채권이양도되었다는통지를지체없이하여야한다.
       2. 양수인은양도인을대리하여채권이양도되었다는통지를할수있다.양도인은본계약에서채무자에대한채권양도통지권한을양수인에게부여한다.
       3. 양도의통지는확정일자있는증서로써하여야한다.
    2. (채권보증)
       1. 양도인은대상채권이양수인이외제3자에게양도되거나, 가압류, 압류등으로권리의하자가없음을보증한다.
       2. 양도인이채무자에대하여상계적상에있는반대채무를가지고있지않음을확인한다.
       3. 채권양도의통지후본계약이불성립,무효,취소등으로채권양도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양수인은그때까지임꺽정이선의로양수인에게변제한금액을양도인에게반환하여야한다.
    3. (비밀유지)
       1. 계약당사자는본계약으로인해발생한상대방으로부터제공받거나취득한공공연히알려져있지않은기술적, 영업적정보및자료로서유무형의여부및그기록의형태를불문한정보(이하‘비밀정보’)를상대방의동의없이제3자에게공개하거나,유출하여서는아니된다.
       2. 다음각호의경우에는공개할수있다.
          1. 비밀정보를제공한상대방의사전동의가있는경우
          2. 본계약의이행을위하여반드시필요한합리적인범위안의경우
          3. 법률및정부기관등에서정하는관련법규에따라공개가필요한경우
       3. 이조항은본계약의종료이후에도 [1년간] 효력이있다.
    4. **(계약의해제)**
       1. 다음각호의경우상대방당사자는 14일이상의기간을정하여서면에의한통보로써그시정을요구하고, 그에대한시정이이루어지지아니한경우본계약을해제또는해지할수있다.
          1. 채무자가양도인에게대항할수있는사유로양수인에게대항하겠다는의사를표현한경우
          2. 일방당사자의중요재산에대한제3자에의한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신청
          3. 일방당사자의채권자혹은주주에의한회생신청혹은일방당사자의채권자에의한파산신청
          4. 기타일방당사자에의한본계약상중대한의무의위반
       2. 전항에도불구하고, 일방당사자에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상대방당사자는최고없이서면의통지로즉시본계약을해제또는해지할수있다.
          1. 전항의비밀유지의무를위반한경우
          2. 일방당사자의중요재산에대하여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결정이있는경우
          3. 일방당사자의회생신청혹은일방당사자의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에의한파산신청
          4. 일방당사자에대한회생개시결정혹은파산선고
          5. 일방당사자에대한해산결의혹은해산사유발생
          6. 일방당사자가상대방당사자혹은제3자에게발행한어음또는수표가지급거절되거나, 당좌거래정지처분을받은경우
       3. 천재지변등예측할수없는부득이한사유로본계약의목적을달성할수없거나본계약의이행이현저히곤란하게된경우일방당사자는상대방당사자에대한서면의통지로즉시본계약을해제또는해지할수있다. 단, 부득이한사유의발생사실및진행상황을상대방당사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여야하며, 상대방당사자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노력하여야한다.
       4. 본계약이중도에해지되더라도중도해지일전에이미발생한각당사자의권리및의무는유지된다. 또한해지에책임이있는일방당사자가본계약에따라중도해지일까지이행한부분에대하여상대방당사자는자신의선택에따라그에상당하는대가를지급하고이를취득할수있다.
       5. 본계약이해제또는해지될경우, 계약해제또는해지에관하여책임있는당사자는상대방에대하여본계약해제또는해지로인한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5. (기타)
       1. 완전합의 : 본계약은본계약체결일현재본계약상의거래에대한계약당사자들사이의완전한합의를구성하며, 본계약체결전에이루어진계약계약당사자들의모든구두또는서면의양해사항, 합의사항또는기타보증사항을대체한다.
       2. 계약의변경:본계약내용을수정또는변경할경우계약당사자들은반드시서면으로합의하여야하며,그밖의방식으로이루어진수정또는변경에대한합의는효력이없다.
       3. 양도금지 :본계약의계약당사자는상대방의서면에의한사전동의없이본계약상의지위, 권리또는의무의전부또는일부를제3자에게양도, 매매하는등처분할수없다.일방당사자가합병혹은영업양도를하는경우상대방당사자로부터사전에서면동의를받아야한다.
       4. 준거법 :본계약은대한민국법에의해해석되며이에따른다.
       5. 분쟁해결 :
          1. 본계약에명시되어있지않는내용의해석및일체의분쟁에대하여는계약당사자상호간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관련법규및상관습을고려하여협의로해결하기위하여노력한다.
          2. 전항에따라해결되지않는경우에는소송으로분쟁을해결하며, [피고의주소지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을전속적관할법원으로한다.

[Option]

* + - 1. 분쟁해결 :

본계약으로부터또는본계약과관련하여발생하는모든분쟁은대한상사중재원의중재규칙에따라중재에의해최종해결한다.

* + - * 1. 중재인의수 : 3
        2. 중재인선정방법 : 양당사자가 1인의중재인선정. 각중재인이의장중재인선정.
        3. 준거법 : 대한민국법률
        4. 중재지 : 서울/ 대한민국
        5. 중재에사용될언어 : 한국어

위계약의성립을증명하기위하여본계약서 2통을작성하여계약당사자간이의없음을확인하고각자기명날인하여각 1통씩보관한다